

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에 관한 고시

포항시 고시 제 2017-88호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
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유수면 점·사용허가 하였음을 고시 합니다.

- ☐ 허가번호 : 17-15
- ☐ 점용위치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칠포리 197-31, 197-34번지선
- ☐ 점용목적 : 해수욕장 편의시설(판매·대여) 운영
- ☐ 허가기간 : 2017. 6. 24 ~ 2017. 8. 20
- ☐ 허가면적 : 7,200m²
- ☐ 허가 연월일 : 2017. 6. 21
- ☐ 피허가자 주소 : 포항시 북구 흥해읍 해안로 1540번길 20-2
- ☐ 피허가자 성명 : 칠포2리어촌번영회 회장 장병관

2017. 6. 23

포 항 시 장

